

기획재정부 <small>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</small>	보도자료		
	보도일시	2008. 4. 29(화) 조간	
배포일시	2008. 4. 28(월) 10:30	담당부서	세제실 소득세제과
담당과장	이상을(2150-4150)	담당자	최영전 사무관(2150-4151)

제 목 :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('08.4.29)

- ◇ 부처협의·입법예고·법제처 심사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2008.4.29일 공포·시행될 예정
- 주요내용은 지난 3.14일 "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(안)"제하의 보도자료와 아래의 내용을 참조

1.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조정

□ 전환정비사업조합*과 주택조합**의 공동사업자(조합원)의 소득을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

○ 동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행과 같이 중간예납 세액을 고지할 경우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, 다음 연도에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소득을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함

* 전환정비사업조합 : '03.6.30 이전에 구 「주택건설촉진법」에 의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(전환)한 조합('03.6.30 이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법인세 납부대상)

** 주택조합 : 「주택법」에 의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·직장·리모델링 주택조합

※ 소득세 중간예납제도

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/2에 상당하는 세액을 11.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

※ 적용시기 : 금년 11월에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

2.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한 분납신청제도 폐지

□ 현재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해서는

- 납세자가 분납신청하는 제도와 분납신청이 없더라도 분납이 가능한 세액에 대해 기존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재고지하는 제도가 중복적용되고 있어 실익없이 납세자의 혼란만 초래

□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

- 금년 11월 중간예납분부터는 “분납신청제도”를 없애 납세자가 별도로 분납신청할 필요없이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함

※ 소득세 분납제도

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*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하는 제도

- *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: 1천만원 초과분
-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: 전체 납부세액의 50%

<예시> 1,700만원 중간예납세액 중 1,000만원만 11.30일까지 납부한 경우
별도의 분납신청 없이도 미납한 700만원(분납가능세액)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가산금없이 다음연도 1.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고지

※ 적용시기 : 금년 11월에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